

[서식 예]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

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

채 권 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주식회사 ■■은행(소관:■■동지점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■■■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구채권의 표시 : 금 ㅇㅇㅇㅇㅇ원

1. 금 ㅇㅇㅇㅇㅇ원

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합○○○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원금

2. 금 ㅇㅇㅇㅇ워

위 제1항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3. 금 ㅇㅇㅇ원(집행비용)

내역 : 금 ○○○원(신청서 첩부인지대)

금 〇〇〇원(송달료)

금 ○○○원(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)



4. 합계 금 ㅇㅇㅇㅇ이원(1+2+3)

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신 청 취 지

- 1.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.
- 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합○○○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대여원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으나채무자는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위 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소명방법 및 첨부서류

1.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	1통
1. 송달증명원	1통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	1통
1. 송달료납부서	1통



20 O O . O . O . 의 채권자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

[별 지]

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

금 ㅇㅇㅇㅇ원

채무자(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)가 제3채무자(소관: 00지점)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[다만,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금액]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. 다만,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(적금·부금·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)으로 민사집행법 제245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.

- 다 음 -

- 1. 압류·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·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.
 - ① 선행 압류·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
 - ② 선행 압류·가압류가 된 예금
- 2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.
 -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
 -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펀드예금 ⑩ 신탁예금
 - ① 채권형 예금 ②청약예금
- 3.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. 끝.


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23조, 제229조	
			제1항, 제246조	
제출트	부수	는 신청서 1부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
불복경	절차	·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, 제229조제6항)		
및 7	기간	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		
비 용	·인지액 : 4,000원 (압류 2,000원 + 전부 2,000원)			
	・송달료: 당사자수(채권	자, 채무자, 제3채	무자)×○○○원(우편료)×2회분	
フ	타	·전부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,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.		



- ·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, (1)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,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, (2)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64810 판결).
- ·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,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수는 없다(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0다72589 판결).
- ·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7527 판결).
- ·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, 그 말소등 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,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,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,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(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27910 판결).
- ·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,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 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(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71699 판결).
- ·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,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,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 조 단서(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)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됨(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99다68652 판결).

참고판례요지



참고판례요지

·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, 그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.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신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신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님(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 8839 판결).

※ 제출법원{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}

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방법 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), 다만,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- 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